

## 지회운영규정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본 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규정된 지회 관련조항 외에 지회의 운영을 협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회계년도)** 지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.

**제3조(총회)** 지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 지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지회규약에 따라 수시 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**제4조(임원의 임기)** 지회장은 중임하지 아니한다. 다만 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5조(대외활동)** 지회의 중요한 대외활동은 본 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6조(통상자산운영)** ① 지회통상자산 중 본 회에 납부하는 회비(입회금, 정회원회비, 준회원회비, 종신회비)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.

1. 부산울산경남지회, 광주전남지회, 대구경북지회, 대전세종충남지회 : 30%
2. 충북지회, 전북지회, 제주지회, 강원지회 : 면제
- ② 지회소속특별회원 회비 기타 찬조금은 지회통상자산으로 충당한다.
- ③ 본 회는 지회통상자산에 보조할 수 있다.

### 부칙

(규정시행) 본 규정은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1977년 2월 8일 및 1977년 5월 17일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지부설치 운영지침과 지부관련규정 제1호는 폐지한다.

1. 이 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1991년 1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199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